의 안 번 호			제 호			
의		결		년	월	일
연	월	일		(제	희)	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: 2021년 월일

제 안 자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개정('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무원의 의무 규정(안 제2조~안 제6조)
 - 충청북도의회 공무원으로서 책임완수, 비밀엄수 등의 의무, 근무기강 확립, 친절의무 등을 규정
-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안 제11조)
 - 당직·비상근무 사항, 겸임·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권,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사항, 공무원 신분증 발급 등을 규정
-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안 제15조)
 -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, 연가계획, 병가, 특별휴가 등을 규정
- 3. 조례안전문 : 붙임
- 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붙임

O 조례안예고 : 해당없음

O 관련부서협의 : 해당없음

O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복무 선서) ① 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은 「지방공무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충청북도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.
 - ③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.
- 제3조(책임 완수)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.
- 제4조(비밀 엄수)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
 - 2.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,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
 - 3.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
 - 4.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

- 제5조(근무기강 확립)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.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·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·숙직·방호원,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,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② 의장은 전시·사변,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,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8조(겸임 근무)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 -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파견 근무)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-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외의 정부기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,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수 있다.
- 제11조(신분증)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2장 휴가 등

- 제12조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) 「지방 공무원 복무규정」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 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(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)을 말한다.
- 제13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, 공·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며,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 - 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

- ④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
- ⑤ 제14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.
- 제14조(병가)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.
 - 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
 - 2.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
 - ② 의장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제15조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.
 - ③ 풍해·수해·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.
 - ④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,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- ⑤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의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- ⑦ 시행령 제7조의7 제8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.
- 1. 사용한 날(日)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,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
- 2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
- 3. 월(月)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. 다만,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(月)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(月)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
- 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(日)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되어야 한다. 다만,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되어야 한다. 또한,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없으며,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선서문(제2조제2항 관련)

선 서

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, 국가를 수호하며,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.

선서의 절차 및 방법(제2조제3항 관련)

1. 선서의 시기 및 장소

- 가.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지방의회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.
- 나.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.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.
- 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.

2. 선서의 방식

- 가.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.
- 나.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.

3. 선서 책임자

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임용권자가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.

공직자의 행동률(제5조 관련)

대 민 관 계	대 내 관 계		
○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.	○ 시간을 엄수한다.		
○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.	○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.		
○ 전화는 소속과 이름을 먼저	○ 근검절약한다.		
밝히고 공손히 받는다.	○ 남에게 겸손히 한다.		
○ 문의는 공손하게, 안내는	○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.		
친절히 한다.	○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		
○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	아낀다.		
검토한다.	○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.		
○ 민원은 신속·공정하게 경제부담	○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.		
없도록 처리한다.	○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.		
○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	○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.		
처신한다.			
○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			
맞이한다.			
○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			
일한다.			

[별표 4] 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15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・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	1
탈 상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1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법

제47조(복무 선서)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.

제30조의3(겸임)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기관이나 그밖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- 제30조의4(파견근무)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가기관, 공공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(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),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,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·기간·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